

실외결과 원안대로가결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29	11	1983. 4. 21	총재 하영기

의안 「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」 일부 개정

의결사항 「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」을 본원과 같이
일부 개정한다.

제외관계
별기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및 은행법 제30조

제외취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
위하여 한국외환은행을 「금융기관 여신
운용규정」상의 「중소기업에 대한 대출
지도대상」 적용대상 금융기관으로 추가
취급자 본원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
제의함

719 36/45

참고사항 제의관계 법조항

한국은행법 제7조

- ① 한국은행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둔다.
-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
범위 내에서 통화정책의 운영 관리에 관한
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
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
하며 한국은행의 업무운영관리에 관한
지시 감독을 한다.
-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
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
지시를 발할 수 있다.

(이 하 생략)

720

은행법 제30조

금융기관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통제의
적용을 받는다.

1~2 (생략)

3. 금융기관의 대출과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및
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각 종별 최고한도의 제정,
일정한 기한내의 대출과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
및 투자의 증가율 또는 각 종별 증가율의 제한

4. (생략)

5. 금융기관의 최장 대출기한, 담보의 종류와 담보품에
관한 규정
다만, 이 호의 규정은 이 법 제20조, 제21조,
제22조, 또는 제27조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
한다.

6. (생략)

721

(붙임)

「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」 일부개정 (안)

현행	개정 (안)
제 1 조 (생략)	제 1 조 (현행과 같음)
제 2 조 (여신운용지침) ① ~ ③ (생략)	제 2 조 (여신운용지침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출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하며, 시중은행은 원화금융자금 대출금증가액의 35% 이상, 지방은행은 55% 이상을 각각 중소기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.	④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출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하며, 시중은행 및 한국외환은행은 원화금융자금 대출금 증가액의 35% 이상, 지방은행은 55% 이상을 각각 중소기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.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(이하 생략)	(이하 현행과 같음)
(선설)	부칙
	이 규정은 1983. 4. 21 부터 시행된다.